

종목별 국제체육행사 국내유치에 관한 규정

제정	2016. 3. 21.
개정	2023. 9. 11.
전부개정	2025. 0. 00.

제1 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제체육행사 국내유치의 체계적인 검토와 관리로 유치경쟁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,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5. 0. 0.>

1. 무분별한 대회유치 및 개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및 유치경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예방 <개정 2025. 0. 0.>
2. 대회유치 타당성을 심의하여 국제체육행사의 합리적인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

제2 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‘국제체육행사’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, 회의 등을 말한다.

1. 국제경기연맹(IFs), 아시아경기연맹(AFs) 및 기타 공인된 국제체육기구에서 주최,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 및 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아시아선수권 이상 대회(이하 “국제체육대회”라 한다)
2. 국제경기연맹(IFs), 아시아경기연맹(AFs) 및 기타 공인된 국제체육기구에서 주최, 주관하는 국제체육 관련 회의(이하 “국제체육회의”라 한다)

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체육행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원종목단체 등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국가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행사로, 해당 단체의 유치신청에 NOC의 보증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행사로 한다.

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별 국제체육행사는 회원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(“이하 체육회라 한다”)에 유치계획과 유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제체육행사 국내유치 심의) ① 국제체육행사 유치 심의는 체육회 국제위원회(이하 “국제위원회”라 한다)가 담당한다. <개정 2025. 0. 0.>

② 국제위원회가 국제체육행사 유치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0. 0.>

1. 국제체육행사 개최 능력(경기시설, 수용능력, 개최경험, 인력 등) <개정 2025. 0. 0.>

2. 스포츠 교류 및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 체육에 미치는 영향 <개정 2025. 0. 0.>

3. 국제체육행사 개최가 지역발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<개정 2025. 0. 0.>

③ 국제위원회는 국제체육행사 유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25. 0. 0.>

제5 조(국제체육행사 개최계획서 등의 제출) ① 국제체육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국제체육행사 개최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

2. 유치관련 회의록(해당 회원종목단체 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 또는 이와 상응하는 회의)

3.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이행각서(별지 제2호서식) <개정 2025. 0. 0.>

4. 유치희망도시 이행각서(별지 제3호서식) <개정 2025. 0. 0.>

5. 유치희망도시 재정보증서(별지 제4호서식) <개정 2025. 0. 0.>

6. 유치희망도시 시설물 사용 허가서(별지 제5호서식) <개정 2025. 0. 0.>

② 국제체육대회를 국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아래 각 호에 따라 유치희망도시가 지방체육회로부터 받은 동의서(별지 제6호서식)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0. 0.>

1. 유치희망도시가 시, 군, 구인 경우, 시·군·구체육회와 시·도체육회로부터 받은 동의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0. 0.>

2. 유치희망도시가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인 경우, 시·도체육회로부터 받은 동의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0. 0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경유하여 체육회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이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국제체육행사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 6 조(국제체육행사 개최계획서의 내용) 국제체육행사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행사 개최목적 및 취지

2. 행사 개최기간, 장소, 행사소요인력 및 운영계획

3.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 대책 <개정 2025. 0. 0.>

4. 주요시설 현황 및 기존 시설 활용 계획 <개정 2025. 0. 0.>

5.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이용계획

6. 관계기관(회원종목단체, 지방자치단체, 지방체육회 등)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 <개정 2025. 0. 0.>

제7조(도시 선정)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국제체육행사 유치희망도시가 2개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,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선정하며,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0. 0.>

제8조(국제체육대회 준비단계에서의 협의)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체육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0. 0.>

1. 유치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개최계획 및 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방체육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 단, 유치희망도시가 시, 군, 구인 경우 시·도체육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5. 0. 0.>
2. 조직위원회 구성 및 대회준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진행 상황에 대해 지방체육회와 매 분기별 협의해야 한다. 단, 유치희망도시가 시, 군, 구인 경우 시·도체육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5. 0. 0.>

제9조(규정 수용 및 준수)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체육회는 예산지원 또는 행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부 칙 (2016. 3. 21.)

이 규정은 대한체육회가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하되, 첫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 (2023. 9. 11.)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5. 0. 0.)

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제체육행사 개최계획서

구 분	내 용	비 고	
행사 개최 목적			
행사 개최 취지			
행사 일반 사항	기간		
	장소		
	주최		
	주관		
	참가예상 규모	- 선수, 임원, 기자단	
	행사주기		
	경기종목		
	유치도시정보	- 국제행사 개최경험(사례 예시) - 행사유치 적합성 (지리적 위치, 환경, 기후, 면적, 인구)	
조 직 위원회	행사소요인력		
	구성방안		
	행사운영방안		
재정	소요예산		
	재원조달대책		
	수익금 처리방안		

구 분		내 용	비 고
시설	행사장	행사개최를 위한 주요시설 내역	
		기존 시설물 활용계획	
		국제경기연맹 규정 적합성 여부	
		미비 시설 보완 계획	
		잔존시설물 활용계획	
	숙박	선수단 숙박대책	
		숙박 수용 능력	
	<u>행사 종료 후 시설물 이용계획</u>		
기타 이용가능 편의시설			
교통	선수단(대표단) 수송방법	출입국(공항), 경기장, 숙소 간	
	행사기간 수송계획		
대회 유치	유치추진경과		
	유치일정		
	유치위원회 구성		
	유치계획 및 유치방안		
협조 체계	구축 및 시행방안	회원종목단체-지방자치단체-지방체육회 간 협업 증 대 및 연계성 강화 방안 <u>* 유치희망도시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일 경우, 광역 지방체육회 포함</u>	
기타 사항	내외빈 초청범위		
	문화행사 개최 계획		

※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별지 이용

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이행각서

제○○회 ○○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대한○○협회
(연맹)는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의 상기 행사
유치 심사에 대한 모든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을
서약합니다.

○○ 년 ○월 ○일

대한 ○○○ 협회(연맹)회장

성명 ○ ○ ○

서명 _____

유치희망도시 이행각서

제○○회 ○○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○○시(도)는
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의 상기 대회 유치 심사에
대한 모든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○○ 년 ○월 ○일

○ ○ 시장 (도지사)

성 명 ○ ○ ○

서 명 _____

유치희망도시 재정보증서

제○○회 ○○행사 유치를 희망하는 ○○시(도)는
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개최에 필요한
예산 (“국제체육행사 개최계획서” 재정 부문
명시)을 지원할 것을 보증합니다.

○○ 년 ○월 ○일

○ ○ 시장 (도지사)

성 명 ○ ○ ○

서 명 _____

유치희망도시 시설물 사용 허가서

제○○회 ○○행사 유치를 희망하는 ○○시(도)는
동 행사 개최 시 조직위원회의 경기장 등 주요
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허가합니다.

○○년 ○월 ○일

○ ○ 시장 (도지사)

성 명 ○ ○ ○

서 명 _____

지방체육회 동의 및 의견서

○○체육회는 (지방자치단체명)의 ○○대회
유치에 동의하며,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할
것임을 서약합니다.

※ 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의견:

○○년 ○월 ○일

○○○ 체육회장(직인)